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확대(75세 → 65세)〉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30, 2200832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개 요	1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II. 검토의견: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확대(75세→65세)	3
※ 참고자료	8

I. 개 요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4. 6. 24.

(3) 회부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6. 24.
- (3) 회부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II. 검토의견: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확대(75세 → 65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위탁진료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51조(진료) ① ~ ⑤ (생략)	제51조(진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⑥ 65세-----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7조(의료지원) ① ~ ⑤ (생략)	제17조(의료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u>75세</u>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⑦·⑧ (생략)	⑥ -----<u>65세</u>----- ----- ----- ----- ----- -----, ----- ----- ----- -----. ⑦·⑧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병원¹⁾과 위탁병원²⁾의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족은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인(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 군경·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³⁾(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경우)로서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개정안은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을 65세 이상부터 편입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유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독립유공자 등의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수긍할 수 있음.

1)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2) [참고 2] 위탁병원 현황(9p) 참조.

3) 재해부상군경의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받는 배우자.

< 대상별 의료지원(현행 및 개정안)비교 >

구 분	대 상		현행		개정안	
			보훈 병원	위탁 병원	보훈 병원	위탁 병원
독립유공자법	본 인	독립유공자	0	0	0	0
	유가족	배우자·자녀·손자녀	0	×	0	×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1명	0	75세 이상	0	65세 이상
보훈보상 대상자법	본 인	재해부상군경	0	0	0	0
		재해부상공무원	0	0	0	0
	유가족	배우자	0	×	0	×
		보상금을 받는 배우자	0	75세 이상	0	65세 이상

자료: 국가보훈부

□ 다만, 개정안 심사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과 같이 독립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령을 하향(75세→65세)하여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현재 7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감면진료 연령 하향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진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 둘째,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감면진료 연령 하향까지 감안할 경우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인원은 2025년에 약 3만 7,000여명⁵⁾이 증가하고, 소요예산도 79억원이 소요되는 등 향후 5년간 438억 6,9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하여 재원조달방안이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임.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연령 하향 시 추가소요액(75세→65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독립유공자 유족	292	306	320	335	350	1,603
보훈보상자 유족	8	10	11	14	16	59
국가유공자 유족	7,611	8,005	8,420	8,856	9,315	42,207
참전유공자	-	-	-	-	-	-
무공수훈자	-	-	-	-	-	-
재일학도 의용군	-	-	-	-	-	-
계	7,911	8,321	8,751	9,205	9,681	43,869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은 위탁병원 연령제한 없음('23.10월 연령제한 폐지)

자료: 국가보훈부

5) < 65세이상 연령 하향 시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인원 증가 추계 >

(단위 : 명)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독립유공자 유족	1,369	1,380	1,392	1,403	1,415
보훈보상자 유족	38	44	50	57	65
국가유공자 유족	35,679	36,154	36,635	37,122	37,616
참전유공자	-	-	-	-	-
무공수훈자	-	-	-	-	-
재일학도의용군	-	-	-	-	-
소계	37,087	37,578	38,077	38,582	39,096

- 셋째, 위탁병원 진료와 관련한 재원의 배분에 있어, 감면진료 대상 연령 인하 이외에도 위탁병원 지정 확대,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 감면 지원비율의 상향조정 등 다양한 수요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정된 재원의 분배와 국가의 추가적 재정부담능력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연령 인하 문제는 연령 인하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위탁병원 진료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요구와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수요 증가 및 다양한 의료지원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의탁의료기관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 국가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 1

위탁병원-보훈병원 감면대상자 현황

구 분	위탁병원	보훈병원
보훈보상 대상자법	75세이상 보상금 받는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75세이상 보상금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 -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재해사망공무원 배우자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
	96명	3,381명
특수임무 유공자법	-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가족 중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1인 ※ '16.6.23. 이전 등록자는 유가족 모두
	-	7,207명
5·18민주 유공자법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유공자 가족 중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1인 ※ '16.6.23. 이전 등록자는 유가족 모두
		13,677명
국가 유공자법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75세이상 보상금 받는 선순위 1인 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유공자 가족 중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인 ※ '12.7.12. 이전등록자는 유가족 모두
	54,676명	1,202,293명
독립 유공자법	75세이상 보상금 받는 선순위 1인	독립유공자 배우자 독립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3,772명	86,855명
참전 유공자법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92,169명	110,897명
합 계	150,713명	1,424,310명

※ 자료: 국가보훈부(2023.12.31.일 기준)

참고 2

위탁병원 현황

('23. 12. 31. 현재)

구 분	계	중앙병원	인천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합 계	702	238	31	137	124	84	88
종합병원	89	30	8	14	16	9	12
병 원	164	48	6	38	30	21	21
의 원	449	160	17	85	78	54	55
진료권역	-	서울,경기 강원	인천	부산,경남, 울산,제주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대전,충남 충북,세종

[연도별 위탁병원 지정 및 예산 현황]

< 연도별 지정현황 >

연도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
위탁 병원수	312	309	308	310	314	320	418	518	640	702

< 위탁 진료비 예산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예 산	1,965	1,926	1,933	1,978	2,220	2,479	2,268	2,350	2,526	2,674

참고 3

위탁병원 연혁

연도	지원대상	지원 범위 및 내용
1986	국가유공자, 유가족	제주지역에 2곳의 위탁병원 최초 지정 운영 (보훈병원 자체예산)
1991	국가유공상이자	위탁병원 전국 30개소 확대 지정 운영
2000	상이자 등급 확대	상이 7급 신설, 상이 10개 등급 전 질환 국비진료 실시
2003	국가유공상이자	위탁병원 전국 170개소 확대 지정 운영
2008	국가유공상이자	위탁병원 58개소 추가지정
2009	75세 이상 수권유족 및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선순위자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원외처방 약제비 제외)의 60% 감면(7. 1)
2010	국가유공상이자 등	위탁병원 전국 300개소 확대 지정 운영
2012.7	7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1인에 감면진료 지원
	75세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사망한 재해 부상군경의 배우자
2018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약제비 제외) 감면율 확대(60→90%)
2022	참전유공자, 무공, 재의	위탁병원 약제비 연간한도내* 지급('22.10.) * 참전·재의 252천원, 무공 16천원
2023	참전유공자, 무공, 재의	위탁병원 연령제한 폐지

참고 4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 대상자 현황

병원별 구분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대상	- 애국지사 및 유·가족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보훈보상자 및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환자 포함)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 복무 중 발병자	- 애국지사 본인 - 상이유공자 본인 - 무공수훈자 본인 - 참전유공자 본인 -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 - 75세이상 전몰유자녀수당을 받는 유족 1인
진료비 지원범위	- 국비환자 :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 7급 비상이처 10% 본인부담 - 감면환자 : 30~90% 감면 지원 ※ 비급여 지원	- 국비환자 : 요양급여+일부비급여*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7급 비상이처 10% 본인부담 - 감면환자 : 60~90% 감면 지원 ※ 비급여 미지원
약제비	- 국비환자 : 전액 국가부담 - 감면환자 : 약제비 총액 30~90%감면 지원	- 국비환자는 약제비 국가부담 - 감면환자 본인(참전, 재의, 무공)은 연간 한도내* 약제비 지급 * 참전·재의 252천원, 무공 16천원
입원기간 및 진료비 한도	- 제한 없음	- 30일 - 국비환자 300만원 - 감면환자 200만원
기타	- 건강보험 가입 무관	- 감면진료는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